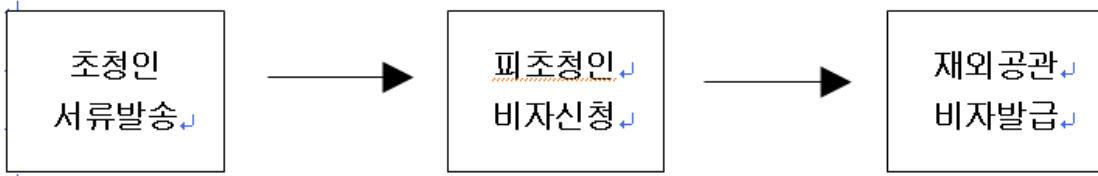


[국제처 안내문]

【 단기취업(C-4) 비자 】



- 신청요건 : 수익이 따르는 계약에 의하여 국내 공·사기관 등으로부터 초청되어 단기간 강연·강의활동을 하는 자가 이에 해당됩니다. (국내체류기간 90일 이내)
- 초청인은 아래 제출 서류를 준비하여 해당 부서에서 총장승인을 받은 후 피초청인에게 송부해야 합니다.
 1. 고용계약서 (작성 후 공문으로 국제지원센터에 총장직인 요청-> 국제지원센터 발급)
 2. 초청사유서 (작성 후 공문으로 국제지원센터에 총장직인 요청-> 국제지원센터 발급)
 3. 사업자등록증 사본 (공문으로 재무부에 요청-> 재무부 발급)
- 피초청인은 관련 서류를 수령하여 거주지역의 재외공관에 직접 신청합니다.
 - ▶ 재외공관에 제출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.
 1. 여권
 2. 사증발급신청서
 3. 고용계약서
 4. 초청사유서
 5. 사업자등록증 사본

초 청 사 유 서

성 명 :
성 별 :
생년월일 :
소속 및 직위 :

우리나라의 입장에서 중국의 역사를 이해되고 연구하는 것도 중요하나, 중국인의 입장에서 연구하고 이해하는 중국사 또한 필요한 일이라 생각합니다. 이에 본 학과에서는 중국과의 국교 수립 이전인 1992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북경대학의 역사학과 교수를 초청하여 강연을 해왔고, 1996년에는 상해의 복단대학과도 학술교류협정을 체결하여 1996년도 1학기에는 북경대학, 2학기에는 복단대학의 교수를 초청한 바 있습니다. 또한 2004년부터 북경대학교와 복단대학교에서 격년에 한 학기씩 객원교수를 초빙하여 학술교류를 유지하는 외에도, 격년에 두 학기는 중국 전역의 우수한 학자를 고루 초빙하여 보다 다각화된 양질의 학문과 교육을 학생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.

이에 따라, 다가오는 2017년 1학기에는 북경대학 역사학과의 *** 교수를 초청하기로 하였습니다. *** 교수는 중국 근현대사 분야에서 탁월한 연구업적을 내고 있는 뛰어난 학자인 바, 본 학과는 물론 국내의 중국사 연구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. 위와 같은 사유로 *** 교수를 초청하고자 합니다.

2017년 3월 1일

고 려 대 학 교 총 장